

### ③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

▶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양식산업과	과장 허만옥 사무관 김원평	044-200-5630 044-200-5642

## I. 사업개요

### 1. 목적

-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,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

### 2. 근거법령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 촉진법」 제9조(신·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·보급사업비의 조성) 및 제10조(조성된 사업비의 사용)
  -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- 「수산업·어촌발전기본법」 제26조(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)
 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·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3조(정부와 에너지사용자·공급자등의 책무) 및 제14조 (금융·세제상의 지원)
  -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.

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

성과지표	2021 목표치	최근 4개년 실적				지표산출 시기	측정방식
		17년	18년	19년	20		
연간 설비보급량(kW)	400	-	200	1,792	50	익년 2월	발전 용량(KW) *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(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)

### 4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
합 계	11,900	6,400	3,500	1,000	1,000
- 국 비	5,950	3,200	1,750	500	500
- 지방비	3,570	1,920	1,050	300	300
- 자부담	2,380	1,280	700	200	200

### 5. 2021년 지원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내역	지원규모 (개소)	지 원 액			
		계	국고	지방비	자담
태양광발전설비 시설	200kW (2개소)	1,000	500	300	200

※ 지원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
## II.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### 1. 사업대상자
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
- 「수산업법」, 「내수면어업법」 및 「수산종자산업육성법」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
  - \*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

### 2.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

- 사업자선정
  - 해당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(제방, 수조구조물 외벽 끝), 지붕 등을 이용하여 최소 50kW 규모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양식장이어야 함
- 대체사업자 선정
  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할 수 있음
- 사업추진 제한지역
  - (시장 군수·구청장은 “토지이용계획 확인원” 필히 확인)
 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(年數)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
  - 개발제한구역,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, 수변경관지구,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, 농업진흥구역 등 발전사업허가의 취득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
-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
  -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
  - 수산업법,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,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
  -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「수산 생물질병관리법」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
- 육상 축제식양식장 내 부유식 태양광설치 지원 제외

### 3.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#### ① 지원대상

- 해수 또는 담수를 이용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, 건축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(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)
- 유휴부지(제방 부지 등)에 설치하는 경우 수면과 연접하여야 하며, 태양광발전설비 전체 면적의 25%를 초과할 수 없다.
- \* 지원시설은 수면을 벗어나 단독으로 설치 불가

#### ② 대상시설 요건

- 양식시설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
  -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신청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
  -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    - \* 시설물을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
  -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,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
    - \* 사업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비 반입, 소음, 진동, 빛반사 등 주변 환경 및 공사 진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.
-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「문화재법」, 「건축법」 등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 양식장이어야 함
- 사업신청 해당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시·군 관리계획 조례에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양식장이어야 함
- 에너지발전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
  - <발전설비(모듈, 인버터 등) 적용 기준>
    -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(KS) 인증을 받은 제품
    -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
### ③ 사업자 선정 기준

- 양식장 시설부지 및 시설물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인 경우 우선 지원
- 사업기간 내에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
-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우선 지원
-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
  - \*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[별지 14호]를 기준으로 평가

#### < 사업자 선정 방법 >

- 자체체에서 어가별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
- 수산조정위원회는 대상자 사업계획서, 사업여건,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등 종합하여 결정
- 예산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해당 시·도별 배정

###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태양광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목공사, 전기공사, 발·변전설비 및 인버터, 전기실, 구조물 및 지지대, 태양광전지판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
-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 증설(용량 공사비 포함, 거리공사비 제외) 및 감시·제어설비

## 4.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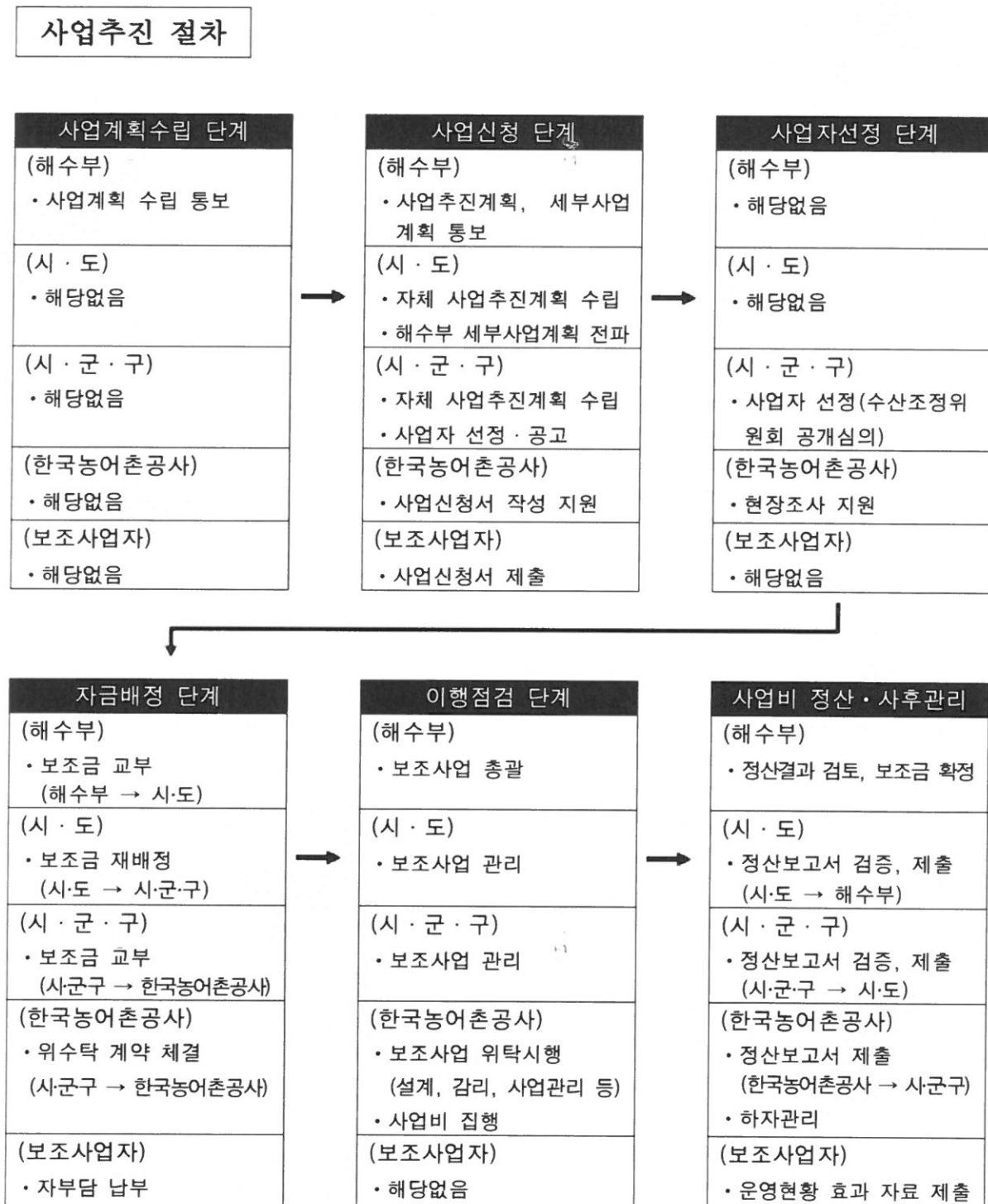
### ① 지원형태

- 지원형태 : 국고보조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- 지원규모 : 국비보조 1,893백만원
  - 총사업비 3,786백만원(국비 1,893, 지방비 1,136, 자담 757)
- 사업시행기관 : 시·군·구청장(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)

### ② 지원한도

-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비는 발전용량 용량에 따른 지원
  - 지원 사업비 : 발전용량(kW) × 지원한도금액 (지원한도 : kW당 250만원)
    - \* '21년 사업의 경우 발전용량을 500kW이하로 제한하여 사업비 책정

## II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

## 1. 사업계획수립 단계

### 해양수산부

-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·도에 통지('20.12월)
- 시·도의 사업수요,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(예산 확정 시)

## 2. 사업신청 단계

### 시·도

-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·군·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('20.12월)
- 시·군·구별 사업자 선정 시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('21.3월)

### 시·군·구

- 어업인,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(계속)
  - 발전수익 등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가에 설명 (한국농어촌공사 협조)
- 어가의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세부사업계획서)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·도에 제출('21.2월)
  - 시·군·구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[별지 제1호서식]
  - 시·군·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[별지 제2호서식]
  - 사업신청 시 어업인에게 복합민원 사전심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, 심사 결과를 사업신청자 및 한국농어촌공사(위탁시행기관)에 통보

### 한국농어촌공사(위탁시행기관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('21.2월)
-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('21.2월)

### 사업대상자

- 한국농어촌공사,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'21.2월)
  - 사업신청서 작성 시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실 필요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 형식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
  -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지 해당 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 심사를 청구하여 사업 사전검토 결과 제출
  - 제출서류 : 사업 신청서[별지 제3호서식], 사업 세부계획서[별지 제4호서식],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

### 3. 사업자선정 단계

#### 시 · 도

- 시·군·구별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·도에 통보시 시·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('21.3월)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('20.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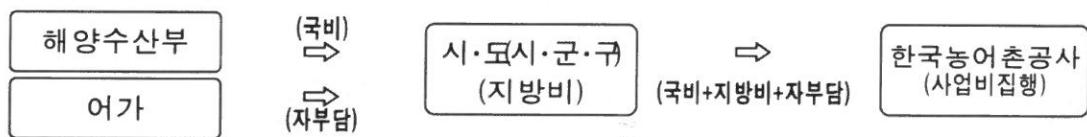
#### 시 · 군 · 구

- 시·군·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, 사업성 검토서, 현장조사서를 검토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우선순위 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, 30%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
  -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(별지14호)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사업자를 선정('21.3월)
-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·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('21.3월~계속)
  - 제출서류 : 사업성 검토서[별지 제1호서식], 현장조사확인서[별지 제2호서식], 사업 신청서[별지 제3호서식], 사업 세부계획서[별지 제4호서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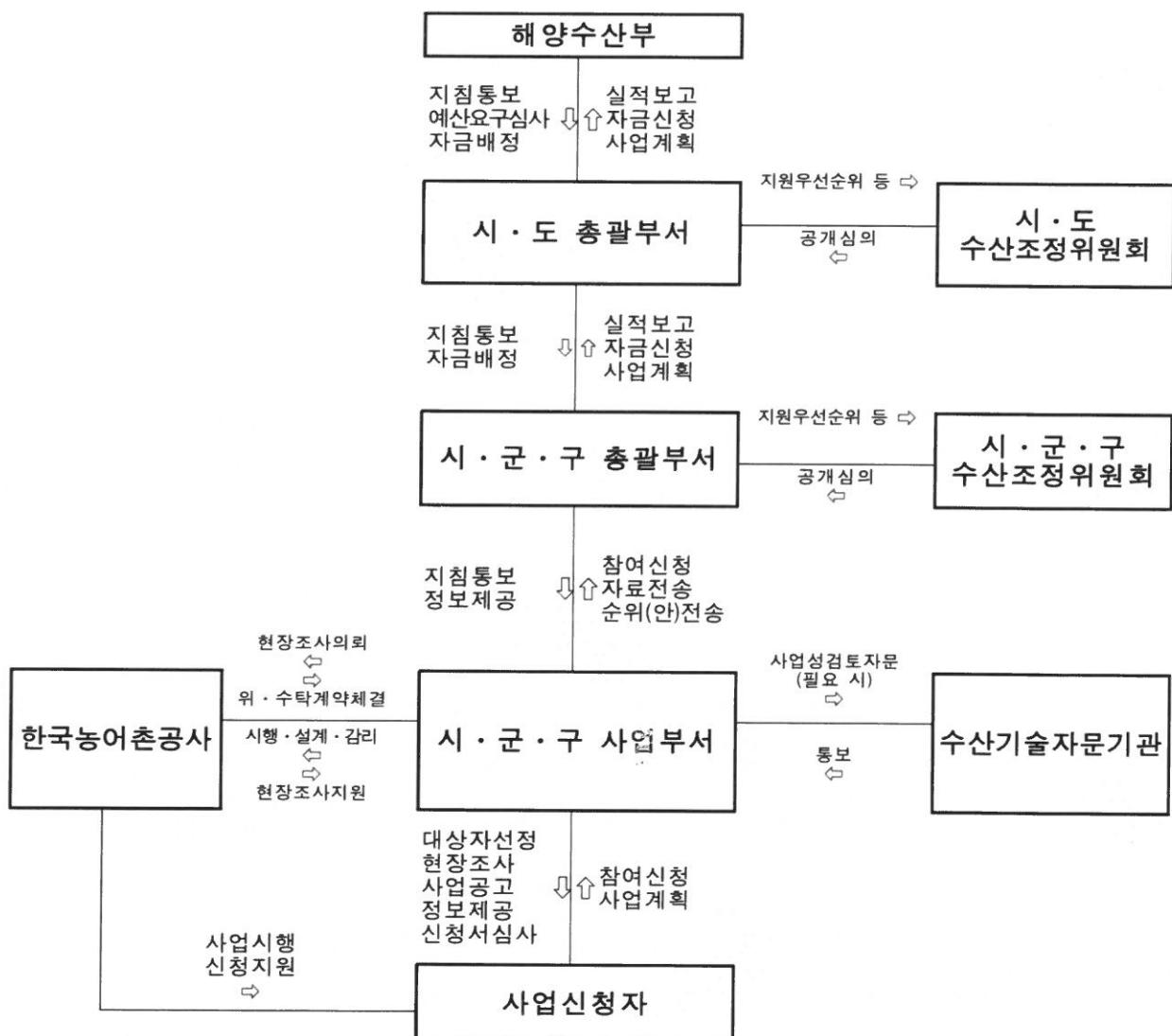
## 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설계, 감리,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

### < 자금 흐름도 >



### (사업 추진 체계도)



\*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, 국립수산과학원,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수산기술보급기관 등

#### 4. 자금배정 단계

##### 해양수산부

- 시·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

#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·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
  -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(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) 조건을 확인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 대상자(여업인 등)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(한국농어촌 공사)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

##### 한국농어촌공사(위탁시행기관)

-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

#### 5. 이행점검 단계

- 기본방향 :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,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

#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,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·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 (분기별 익월 10일까지)하여야 함[별지 제6호서식]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·승인 할 수 있음
  -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·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
  -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·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
- 시·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·군·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 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

#### **한국농어촌공사(위탁시행기관)**

-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
  -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
  -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.
-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·군·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
  -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·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
-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

-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, 감리, 하자관리 등을 담당
-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·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, 사업 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
- 세부설계,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

(단위 : %)

구분	대상액 5억 원이하	10억 원이하	20억 원이하
사업관리대가	8.83	7.98	7.35

- 설계, 감리,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
- 요율 적용은 위·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(어가)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
-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(직선보간법)

## 〈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〉

###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

- 사업 각 단계별 시·군·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
- 건설관련 법령·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,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·강도·안전·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
- 시공 시 공법, 품질,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
-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

### ② 업무 추진단계



-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·군수에게 보고

### ③ 단계별 업무 내용

#### 1) 사업 신청 단계

-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
  -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,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
  - 입지조건 확인(계통연계 용량, 주변 환경, 토지 확보 여건 등)
  -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일정 거리 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
    - \* 일정 거리 : 해당 지자체 조례 발전시설 허가기준 참고
    - \*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

#### 2) 설계 단계

-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
-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
-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

#### 3) 발주 단계

-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, 발주공고,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

#### 4) 시공 단계

-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·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「신·재생 에너지설비의 지원·설치·관리에 관한 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
  - \*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,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,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.
- 공사착수 전 업무 :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·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
- 공사 중 업무 :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

### 5) 준공 단계

-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
- 사업위탁시행자(한국농어촌공사)는 사업대상자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및 시·군·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,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 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
- 준공검사 입회자 : 사업대상자, 시·군·구 담당자

#### 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·군·구에 사업 포기/변경 신청서[별지 제8호서식]를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

## 6. 사업비 정산·사후관리 단계

#### 해양수산부

- 점검시기 :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(상·하반기 각 1회)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협동으로 사업추진 점검
- 점검내용 및 방법 : 사업계획 이행실태,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
- 점검결과 조치 :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
- 사업완료 익년 7~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,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·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- 평가기준 : 시·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
-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,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

#### 시·도(시·군·구)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의 총괄 부서에 제출하며, 시·도는 정산결과를 [별지 제7호서식]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

- 시·군·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 월말까지 시·도에 제출하고, 시·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[별지 제10호서식]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,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
-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
-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
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) 및 제31조(보조금의 반환)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하며, 시장·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,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 제공시에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(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)
  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재산명	사후관리 기간	처분제한기준
태양광발전설비	10년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을 금함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

#### 한국농어촌공사(위탁시행기관)

-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·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[별지 제9호서식]
-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
  -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
  -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한 효과분석 계획·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

## 사업대상자

- 태양광발전설비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의년 2월까지 시·군·구 제출[별지 제11호서식]
 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)
-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
-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[별지 제12호서식]

## IV. 202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

### 1. 2022년도 사업수요조사

- 2021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·도지사는 2022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('21. 4월)
  -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
-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·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2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

### 2. 기타사항

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수산 부국고보조금 관리규정」, 「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」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·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## 사업성검토서

### 1. 신청자

신청자		생산자단체 등의 형태		참여자수		
성명 (대표자명)		생년월일 (남/여)		전화		
주소						
신청내용	사업명	사업비 (천원)				
	사업규모	합계	정부지원(재원명)		지방비	자담
			계	보조		
사업 예정지						

### 2. 사업검토

구분		평가			검토의견
		상	중	하	
사업대상자	사업능력	○ 사업신청 자격요건 ○ 자부담 능력			
	사업계획	○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○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○ 사후관리 계획			
	입지여건	○ 사업부지 확보 ○ 토지이용계획 ○ 전력(제통연계) 여건 ○ 주변 민원 발생소지			
지자체	사업여건	○ 지자체 조례의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대상지 사업여건의 부합성 검토 ○ 지방비 확보 여건			

### 3. 종합의견

년 월 일

○○장(인)

[별지 제2호서식]

현장조사 확인서 (태양광)									
신청자 (법인체) 일반개요	신청자			생년월일	(남/여)				
	법인체명	참여자 수	호	설립년월일					
		대표자명		생년월일	(남/여)				
	주 소				경영 경력	년			
연락처	전 화			팩 스					
	휴대폰			이메일					
기 존 시설현황	양식장	총수면적	제방식/석축식	제방식/석축식	제방식/석축식	제방식/석축식			
	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		
	건축 물	형식 /규 모	허가 (신고 여부)	허가 (신고 여부)	허가 (신고 여부)	허가 (신고 여부)	허가 (신고 여부)		
		00m <sup>2</sup> 00m <sup>2</sup> 1동	여/ 부	00m <sup>2</sup> 00m <sup>2</sup> 1동	여/부	00m <sup>2</sup> 00m <sup>2</sup> 1동	여/ 부	00m <sup>2</sup> 00m <sup>2</sup> 1동	여/ 부
	구조 상태								
	지붕면적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m <sup>2</sup>			
	배전선로	계통연계 가능용량		전주번호			선로와의 거리		
	kW		22.9kV 3상4선식 ○○○선 ○○○			m			
진입로	확보여부(여 / 부)			도로폭( m)					
사업신청 내 용	형식	수면활용 고정식 / 수면 부력식 / 지붕 고정식			발전용량	kW			
	발전설비 설치장소	주소지							
		지번		지목	면적	지역·지구(토지이용계획 확인)			
					m <sup>2</sup>				
		잔설 설치가능 장소	가능면 적	m <sup>2</sup>	설치장소				
기타 특이사항 (조사의견)									
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.	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	
조사자 소속	직급		성명	(서명)					
소속	직급		성명	(서명)					
소속	직급		성명	(서명)					

## 현장조사 사진 (1)

위치도(항공사진)

양식장 전체 전경

## 현장조사 사진 (2)

태양광 설치 부분 전경

인입 전주 번호 사진

[별지 제3호서식]

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(태양광)										
신청자 (법인체) 일반개요	신청자				생년월일	(남/여)				
	법인체명	참여자 수	호	설립년월일						
		대표자명		생년월일	(남/여)					
	주 소				경영 경력	년				
연락처	전 화			팩 스						
	휴대폰			이메일						
기 존 시설규모	양식장	총수면적	제방식/석축식	제방식/석축식	제방식/석축식	제방식/석축식				
	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m <sup>2</sup> / 조				
	건축물 형식/규모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허가 (신고) 여부	
	00m×00m×1 동	여/부	00m×00m×1동	여/부	00m×00m×1동	여/부	00m×00m×1동	여/부	00m×00m×1동	여/부
	지붕면적	m <sup>2</sup>		m <sup>2</sup>		m <sup>2</sup>		m <sup>2</sup>		
	부대시설 형식/규모									
	계약전력	kW		연평균 전력료				백만원		
	생산물	종류		생육시기		적정온도		출하시기		
			월~ 월		°C		월			
사업신청 내 용	신청내용	태양광발전설비								
	설치형식	수면활용 고정식 / 수면 부력식 / 지붕 고정식				발전용량		kW		
	모듈설치 장소	지번(대표)								
		확보면적	m <sup>2</sup>		지목					
	전기실 위치	지번	-							
		확보면적	m <sup>2</sup>		지목					
	사업비(천원)				자부담					
	경영여건 (○)	자부담(20%) 가능여부	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	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	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					
	가능	불가	자가	임차잔여기간		대상	비대상			
				년						
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마무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					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										
위와 같이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
20 년 월 일										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
○ ○ ○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										
구비서류: [별지 제4호서식]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부(신청자 작성)										

<첨부서류>

1.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
2.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
  -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(토지) 1통
  -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(시설물 또는 건축물) 1통
3.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(시설물을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)
  -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
  -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(토지) 1통
  -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(시설물 또는 건축물) 1통
  -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 1부[별지 제8호서식]
4.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1부.
5. 신용조사서 1부.
6. 어업(양식업) 면허·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(사본) 1부.
7. 최근 2년 매출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납입증명서 각1부.
8. 어업면허(허가)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(별지 13호) 첨부 제출 1부.
9.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(개인, 법인) 1부.
10.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(별첨) 1부.

(별첨)

##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○○시(군)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,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
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## □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1. 수집 및 이용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</li><li>○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</li><li>○ 사업성과 분석 및 사업만족도 조사 등에 관련된 사항</li></ul>
2. 수집하는 개인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(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</li></ul>
3. 보유, 이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</li></ul>
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시 불이익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사업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</li></ul></li></ul>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### □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
○○시(군)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
#### 1. 제공받는 기관

- 중앙행정기관, 위탁시행기관(한국농어촌공사), 사업성과분석, 만족도 조사, 해양수산 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

#### 2. 제공목적 : 사업관리, 사후관리,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

#### 3. 제공항목

-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

#### 4. 제공 이용기간 :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

#### 5.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

-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
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 년 월 일

동의인 : (인)

○○시장(군수) 귀하

\*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##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 세부계획서

### 1. 사업신청자 현황

#### 가. 전체 보유시설 현황

기존 보유시설(형식/규모)						경력	전기시설		
계	축제식 구조	비닐 (부직포)	철근콘 크리트	패널 구조	기타		현재용량	한전인입 거리	비상 발전기
m <sup>2</sup>	년	kW	m	kW					

#### 나. 전력사용 현황

최근 1년간 전력사용 현황(○○○○년)														
한국전력 고객번호														
사용월	총계	○월												
사용량 (kWh)														

#### 다. 경영 현황(최근 2년)

최근 2년간 분기별 매출액								
년도	○○○○년				○○○○년			
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매출액								

※ 경영 현황 확인을 위한 매출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, 사업소득세 등 증빙서류 제출

## 2. 사업계획

### 가. 태양광발전설비

태양광발전설비 계획				
발전용량	모듈설치 형식	인버터 용량	계통연계	연계전압
kW	수면활용 고정식 / 수면 부력식 / 지붕 고정식	kW 대	유 / 무	저압 / 고압

### 나. 사업장 생산 계획

생산물	면적(마릿수) m <sup>2</sup> (마리)	생산 시기 및 과정				생육 적정온도 °C
		OO 과정	OO과정	OO 과정	OO과정	
계		월 순				

### 다. 재원 조달계획

계	국 비	지방비	자부담	비고
백만원				-

### 라.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

-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
-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, 시기 등

### **3. 사업 기대효과 (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)**

- 가. 경영비 절감 효과
- 나.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

### **4.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**

### **5. 종합 검토 의견(해당 지자체 작성)**

첨부서류 : 1. 사업비 산출근거 1부.

2. 양식장 전경, 발전설비 및 전기실 설치 예정 장소, 한전 인입주 전주번호  
사진 (4매 이상) 1부.

##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협약서

○ 임대인 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○ 임차인 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○ 임대차대상목적물(토지) :

○ 임대차 계약기간 : 년 월 일 ~ 년 월 일 ( 년)

1.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(토지)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.

2.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.

년 월 일

임 대 인 : (인)

임 차 인 : (인)

첨부 1.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.

2.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.

[별지 제6호서식]

##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( 년 분기)

1. 사업명 :
2. 회계명 :
3. 사업주체 :
4. 사업추진내용 :
5. 추진현황

(단위 : 천원)

세부 사업명	연 계획					집행 실적(누계)				
	사업량	국비	지방비	자담	계	사업량	국비	지방비	자담	계

착공일	준공예정일	사업공정 (%)	연간 진도(%)		부진원인 또는 문제점
			계획	실적	

### 6. 대책 또는 건의사항

※ 작성요령

1.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, 인버터, 태양광으로 구분 작성
2.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,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.
3.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.
4.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.

[별지 제7호서식]

##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( 년)

<○○시·도>

(단위 : 천원)

시 · 도	시 · 군 · 구	세부사업	사업량				사업비										
							계			집행실적 (정산)			차년도 이월액				
			개소수	설치 대수	용량 (kW)	열교환기 (kcal/h)	계	국비 (A)	지방 비	자부 담	계	국비 (B)	지방 비	자부 담	국비 (C)	국비 (D)	국비
계																	

- 주) 1. “세부사업”은 “지열”, “해수열”, “인버터”, “태양광”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, 태양광으로 구분 작성  
 2.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 
 3. 국비(A) = (B)+(C)+(D)  
 4. 사업자별(사업자명, 주소)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(엑셀)  
 5.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(한글 또는 엑셀)

[별지 제8호서식]

## 사업(포기/변경) 신청서

1. 사업대상자 :
2. 대표자 성명(생년월일) :
3. 소재지 :
4. 사업 포기/변경 내용 :

사업계획(당초)		포기/변경		사유
내용	금액	내용	금액	
	천원		천원	

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

사유로 사업을 (포기/변경)하고자 함

년 월 일

신청자 : ○ ○ ○ (인)

○○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\* 사업(시설) 변경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주요 변경·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.

## [별지] 제9호서식]

##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[ ] 추진결과( 년)

시·도 시·군· 구	사업자 주소	사업신청내역		사업청산내역						준공여부	
		양식 용품종 류	설비 형식	사업비 (천원)	설비 형식	사업비 (천원)	사업비 (천원)	사업비 (천원)	사업비 여/부	미준 공 사유	준공일
계	소계										

##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(태양광발전) 추진성과 보고서(년)

### 1.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

시·도 시·군·구	사업자명	주소	해수면/내수면	양식품종	양식방법	설비 형식	대수	용량 (kW)	사업신청 (천 원)			사업정산 (천 원)			준공일 (년 월 일)
									국 계 비	국 방 비	자 체 비	국 방 비	자 체 비	국 방 비	
계															
소계															

기온 또는 냉각기간 설정온도	설치 전				설치 후			
	전 기		유 류		전 기		유 류	
	전기 소모량 (kWh)	비용 (천 원)						
월.일 ~ 월.일 (°C)								

\* 기존가운,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여,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(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)

## 2.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

시·도	시·군·구	미흡한 점	개선방안

## 사업자용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(태양광발전) 추진성과 보고서

### 1.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

시·도 시·군·구	사업자명	주소	해수면 /내수면	양식품종 양식방법	설비 형식	대수	용량 (kW)	사업신청 (천원)			사업정산 (천원)		
								국 계 비	지 방 비	자 급 비	국 계 비	지 방 비	자 급 비

가온 또는 냉각기 월.일 ~ 월.일 (°C)	기간 설정온도	설치 전			설치 후		
		전기 전기소모량 (kWh)	유류 비용 (천원)	소득 전기소모량 (kWh)	전기 전기소모량 (천원)	유류 비용 (천원)	소득 발전량 (kWh)

### 2.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

미 흡 한 점	개선 방안

### 3.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(첨부)

[별지 제12호서식] — 사업장 전시 표찰

##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사업

1. 준 공 일 : 년 월 일
2. 사업장소 :
3. 성 명 : (휴대전화 : )  
법인체명 : (참여인수 : 명, 대표 : )
4. 총사업비 : 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)
5. 사업규모 : kW
6.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
7. 양식대상 : (기간 : )
8. 기대효과 :
9. 기술지도 : 소속 (담당자 : )
10. 시공업체 : (담당자 : )

해양수산부 · 한국농어촌공사

· ○○시도 · ○○시군구

### <사업장 전시표찰 규격>

- 규격 : 가로 120cm × 세로 90cm
- 재질 : 포맥스(고밀도 압축판)
- 색상 :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
- 설치방법 :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띠는 곳에 설치
- 기관명 표기 : 시도명 및 시 · 군 · 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

##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동의서

○ 사업신청자 성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

### 동의내용

-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·고지 받았음.
-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(10년)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.

년 월 일

### 공동명의자

연번	주소	성명(날인)	연락처
		(인)	

[별지 제14호서식]

□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

구 분	배점	심사항목	비 고 (증빙자료)
1.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(50)	정량지 표 (30)	10	○ 법적, 제도적 제약 요인의 존재 여부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
		10	○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 사업신청서(별지3호) 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
		10	○ 한국전력 계통연계 여건  (한국전력 해당지점 문의 결과)
	정성지 표 (20)	10	○ 대상지 입지 조건 (설치위치, 진입로, 전기 인입)  사업성검토서(별지1호), 현장조사서(별지2호), 사업신청서(별지3호)
		10	○ 민원발생 가능여부  사업성검토서(별지1호), 현장조사서(별지2호)
2. 사업 계획의 적정성 (20)	정성지 표 (20)	5	○ 재원확보 가능성 (지방비, 자부담)  사업성검토서(별지1호), 사업 세부계획서(별지4호), 신용조사서, 매출계산서
		5	○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세부계획서(별지4호)
		5	○ 대상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사업 세부계획서(별지4호)
		5	○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세부계획서(별지4호)
3. 우선 순위 가점 (30)	정량지 표 (30)	14	○ 발전사업 허가 취득 여부  발전사업허가증
		10	○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
		2	○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100% 사용 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등 제출 증빙서류
		2	○ 친환경 수산물 인증 획득  친환경 수산물 인증서 사본
		2	○ HACCP 등록 양식장  HACCP 양식장 등록증 사본
계	100		